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12. 4-----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01. 12. 4

다. 상 정 일 자 : 제97회 사하구의회(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2001. 12. 18)원안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조치승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통·반설치조례중 통·반장에 대한 해촉규정이 없어, 통·반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하여도 해촉할 수 없는 등, 통·반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통·반장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거나, 장기 질병, 비위사건으로 인한 처벌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도록 하여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나.주요내용

통·반장이 타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나 장기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경우등 통·반장으로서는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이번 조례개정은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촉한 통·반장에 대하여 위촉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해촉에 관한 규정이 없어 통·반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거나, 장기질병, 비위사건으로 인한 형사처벌등으로 통·반장으로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동장이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결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